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96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3조)
- 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 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 라. 주민투표 청구인 전자서명 도입 명시(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 바. 주민투표 야간 운동 제한 시간을 개정함(안 제14조제2항)
- 사. 한글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3. 1. 5. ~ 2023. 1. 25. [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과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서명 하여야”를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날 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

항에 따라” 로, “청구인서명부” 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로, “열람 할” 을 “열람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를 “생년월일을 노출하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부분만” 을 “해당 부분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 를 “제1항에 따른 열람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가 종료되

는 날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3(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하남시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으로, “14일이내” 를 “14일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에 당해” 를 “기간 내에 해당” 으로,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으로, “10시” 를 “11시” 로, “7시 까지는 이를” 을 “7시까지”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설 · 대답에 있어서” 를 “연설 · 대답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으로,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를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으로, “별지제3호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중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자치행정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팀장 직위 · 성명	자치행정팀장 강 학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김정준 (031-790-5029)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도로 작성 4.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제15조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인)
		하 남 시 장 (인)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제15조제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남 시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제15조제3항 관련)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입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남 시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제15조제5항 관련)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하남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제15조제6항 관련)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하남시장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주민투표법」----- ----- ----- -----.
제2조 (시의 책무)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 관계법령에 따라 ----- ----- 외국인은 -----.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삭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들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 ----- 서명하여야 ----- -----

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

-----.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 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날부터 -----
-----.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열람할 -----.

②---- 생년월일을 노출하지 -----

----- 해당 부분만-----.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시-----
-----.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 제1항에 따른 -----

--.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①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하남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하남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 할 수 있다.

⑨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에 부의장을 두되,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3(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하남시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14일 이내-----

<신 설>

제13조 (처리기간) ① (생략)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다만,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③-----
----- 기간 내에 해당 -----

----- 한 차례만 -----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

----- 11시-----
----- 7시까지 -----
----- 연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대답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에 따른 -----
----- 별지 제3호서식
-----.

④제8조제2항에 따른 -----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

제16조 (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판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 (공표방법등) -----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

관계법령 발췌서

1 「주민투표법」 [시행 2022. 10. 27.]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공직선거법」 [시행 2022. 8. 17.]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